

# 진영 신우희가로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 청약시 유의사항

-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원 주택소유” 를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김해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구 분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제한
전용면적 85㎡이하	없음	3년

※ 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거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함 (단, 수도권보급자리지구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유지)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함 (단, 수도권보급자리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만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1층 우선배정 대상 주택형에 청약신청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한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건축과-22661호(2014.05.23)로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38-1번지 외 32필지
- 대지면적 : 14,333.6㎡(아파트 : 13,961.6㎡)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23층 아파트 7동 총 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세대 총 124세대(일반 특별공급 29세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1층 우선 배정 세대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68.5888	86	68.5888	26.0234	94.6122	33.8153	128.4275	43.8410	-
		74.8552	213	74.8552	28.2185	103.0737	36.9047	139.9784	47.8464	8

(단위 : m<sup>2</sup>, 천원)

주택형(m <sup>2</sup> )	층별 구분	세대수	세대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 계
68.5888	2 층	3	29,198,100	149,691,900	178,890,000
	3 층	3	29,198,100	159,631,900	188,830,000
	기준층	80	29,198,100	169,571,900	198,770,000
74.8552	1~2층	20	31,865,700	163,164,300	195,030,000
	3 층	12	31,865,700	170,994,300	202,860,000
	기준층	181	31,865,700	184,834,300	216,700,000

주택형(㎡)	층별구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1 회	2 회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계약시	2014.06.30.	2014.07.30.	2014.09.30.	2014.11.30.	2015.01.30.	2015.03.30.	2015.05.30.	입주지정일
68.5888	2 층	8,944,500	8,944,500	17,889,000	17,889,000	17,889,000	17,889,000	17,889,000	17,889,000	53,667,000
	3 층	9,441,500	9,441,500	18,883,000	18,883,000	18,883,000	18,883,000	18,883,000	18,883,000	56,649,000
	기준층	9,938,500	9,938,500	19,877,000	19,877,000	19,877,000	19,877,000	19,877,000	19,877,000	59,631,000
74.8552	1~2 층	9,751,500	9,751,500	19,503,000	19,503,000	19,503,000	19,503,000	19,503,000	19,503,000	58,509,000
	3 층	10,143,000	10,143,000	20,286,000	20,286,000	20,286,000	20,286,000	20,286,000	20,286,000	60,858,000
	기준층	10,835,000	10,835,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21,670,000	65,010,000

1.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2.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3.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4.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양임.
5.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6.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를 적용하여 동, 호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7.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8.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 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9.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0.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또는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11.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13.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14.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15.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포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봄.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특별공급

##### 1. 특별공급 공통사항

가.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구 분		일 자	장 소
일반 특별공급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접수 일시	2014.05.28.(수) :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선정 일시	2014.05.28.( 수 ) : 17:00	

※특별공급 신청 여건에 따라 선정일시는 지연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해당 청약일정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다.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라. 특별공급의 추첨순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5항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제19조 제7항 신혼부부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마. 특별공급 공통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제외함], 제5항,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해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 할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 1995.2.11) 제7조에 따라 85㎡초과 102㎡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 각 청약통장별 신청가능 전용면적 범위내 해당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신청가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선택일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함.]

바. 계약 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사.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신청자격	계	주택형(주거전용면적 기준)	
		68.5888	74.8552
일반 특별공급	29	8	21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29	8	21
다자녀 특별공급	29	8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29	8	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2	6
<b>합 계</b>	<b>124</b>	<b>34</b>	<b>90</b>

## 3.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가.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단, 관련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율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나.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에서 총 29세대

#### 4.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가.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은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부설연구소근무자 및 기업종사자(산업통상자원부 세부기준 지원대상 기업)]

나. 공급세대 :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에서 총 29세대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2013년 5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건설량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변경됨

나.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함.

다. 공급세대 :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에서 총 29세대

라.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단, 배점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파양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

마.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4자녀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6.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가.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공급계약)이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 중인 부부가 당첨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등과 관련된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사업주체가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유산·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불법 낙태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공급계약)이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제출 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나.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에서 총 29세대

다. 소득기준[2013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자료)]

구 분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606,216원 이하	5,102,802원 이하	5,357,44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527,459원 이하	6,123,362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 모두 인정)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 소득산정
  - ①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②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③ 전년도 전직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표상 '주(현)' 총 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 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④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 급여액 및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산정

- 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 ②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하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 ③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 ④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구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세대주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당해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⑦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⑧ 휴직 등의 경우
  - 전년도 중 일부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

-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예외사항

-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②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④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라.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①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단,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모두 인정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가. 공급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 미적용)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봄으로 특별공급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 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 기간은 3년)

### 나.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에서 총 8세대

### 다.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8.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p>일반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 무주택 입증서류 1통)</li> <li>•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인정증명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처관리명단으로 접수함)</li> <li>•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li> <li>•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국민은행 청약통장:www.kbstar.com, 국민은행 외:www.ap2you.com에서 발급가능)</li> </ul> <p>[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p>
<p>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 무주택 입증서류 1통)</li> <li>•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인정서 1통</li> </ul>
<p>다자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 무주택 입증서류 1통)</li> <li>•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배접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또는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 도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li> <li>•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li> <li>•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국민은행 청약통장:www.kbstar.com, 국민은행 외:www.ap2you.com에서 발급가능)</li> <li>•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li> <li>•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li> <li>•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 무주택 입증서류 1통)</li> <li>•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li> <li>•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 : 자녀 발급기준</li> <li>•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li> <li>• 혼인관계증명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li> <li>•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국민은행 청약통장:www.kbstar.com, 국민은행 외:www.ap2you.com)</li> <li>•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li> <li>•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li> <li>•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확인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li> <li>•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li> </ul>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법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무직자 무직자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 비치)	세무서/접수장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 무주택 입증서류 1통)</li> <li>•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li> <li>•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li> <li>•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국민은행 청약통장:www.kbstar.com, 국민은행 외:www.ap2you.com)</li> <li>•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ul>		
제3자 대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인장</li> </ul> </li> </ul>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일반공급

### 1. 공통사항

가. 이 주택은 민영주택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23)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1년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단,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군’ 거주자는 1,2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로만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다.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라. 당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가점을 제외한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택될 수 없음(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 지역 1년)]

마.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바.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도 정당한 신청자격을 갖추면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함

사.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 청약시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아.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40%, 추첨제 60%</li> </ul>	2014. 05.2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li> <li>- 전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li> <li>• 접수시간</li> <li>- 08:00~17: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6.09(월)</li> <li>• 장소 : 당사 건본주택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li> </ul>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li> </ul>			
	2순위	접수대상 없음				
	3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li> </ul>	2014. 05.3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li> <li>- 전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li> <li>• 접수시간</li> <li>- 08:00~17:30</li> </ul>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및 전화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3.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4항 관련)**

구 분(전용면적)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6호) 제9조에 따라 85㎡초과 102㎡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4.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가.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19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나.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함.(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1. 공통

- 가.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나.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2.2.27)에 따라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5.23)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신청 주택형에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신청자가 당첨 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1층 우선배정 대상 주택형에 한함]

2.순위별

- 가. 1,2순위
  - 1) 1순위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하며,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 전체를 추첨제로 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함. (단,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나.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3.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가.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나.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다. 청약신청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NH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라.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마.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바. 전자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청약이전에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사.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아.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자.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차.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4.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분(단, 국민은행인터넷뱅킹 이용자는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에 유의)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절차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5. 노약자·장애인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비치, 3순위: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li> <li>·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1,2순위 신청자에 한함)</li> <li>· 예금인장(1,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li> <li>·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통</li> <li>·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접수은행에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ul> </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거주지,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6. 3순위자 청약신청금

접수장소	청약신청금 (전주택형 동일)	신청금 납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www.ap2you.com)</li> <li>· 방문청약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전 은행</li> </ul>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접수시 : 신청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자동 인출</li> <li>· 방문 접수시 :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 준비</li> </ul>

#### 가.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4.06.10)부터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① 인터넷 청약자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② 은행 창구 청약자 :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받아야 함.(단, 청약자 본인의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환불시 구비서류
  - ①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②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서류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위임장
- 3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청약가점제

1.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2.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3.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4.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셔야 함.
5.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 으로 계산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기간(17점) 등 총 84점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30세미만 미혼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계산됨)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계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산정기준' 참고)					

## 2. 감점 산정 기준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분	기 준	소유주택 수	
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0점으로 산정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가.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나.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다.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

1.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가.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나.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li> <li>•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신청자가 당첨 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 우선배정 대상 주택형에 한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li> <li>-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1년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미만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li> </ul> </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li> <li>•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li> </ul>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1.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14.06.13 ( 금 )까지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 하여야 함.(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2.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3. 동,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안내서비스 이용방법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이용기간		2014.06.09( 월 ) ~ 2014.06.18( 수 ) (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국금융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4.06.09( 월 ) 08:30 이후( 단, 제공시간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가.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4.06.16( 월 ) ~ 2014.06.18( 수 )(3일간, 시간 : 10:00~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나.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건본주택

다.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라.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을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마.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바.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금융기관	경 남 은 행	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계좌번호	514 - 07 - 0203228	
예금주	대한주택보증(주)	

가. 납부시기 :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을 참조.

나.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무통장 입금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이자는 없음.

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맞추어 상기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라. 계약자는 분양대금 일체를 상기의 납부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그 외의 방법(분양대행사에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한 분양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마.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li> <li>•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하시기바람.) 또는 무통장 입금증</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li> <li>- 이하 해당자에 한함</li> </ul> </li> <li>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li> <li>②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인 자에 한함)</li> <li>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li>④ 주민등록초본 1통(직계존속의 부양기간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시)</li> <li>⑤ 혼인관계증명서 1통(가점제 당첨자 중 만 30세 이전 결혼한 자에 한함)</li> <li>⑥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⑦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li> <li>⑧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li> <li>-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건본주택 비치)</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li>•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li> <li>•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li> </ul>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건본주택에 비치)</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li> </ul> </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자 처리 사항

1.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2.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3.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음.(단,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4.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5.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6.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7.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함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10. 주민등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11.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12. 임대주택(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 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 [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13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2. 아파트 등의 대지면적이 분할, 합병 및 기타사정 등으로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없음]
3.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도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도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4.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6.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7.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 계약자 대출안내

1.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2.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 대금을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3. 대출신청시 발생하는 인지대, 대한주택보증 구입자금보증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4. 중도금 1회차부터 제1금융권 적용을 원칙으로 대출을 알선하며, 중도금의 일부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알선될수 있음.
5.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6. 당사는 용자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7.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8.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제한)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9. 당사가 알선한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관련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4의2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 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 입주예정일

1. 입주예정일 : 2016년 03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 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2.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쟁, 내란, 이상기후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문선),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 바닥타일 및 천연 대리석 디딤판/걸레받이 등 일체), 발코니바닥타일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및 아트월(거실/복도), 발코니 벽도장	콘크리트 벽체 먼처리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마감, 발코니 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정재 및 벽/바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등), 비데,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아일랜드장, 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및 기기(가스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설비수전류, 벽타일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1.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m²)	68.5888		74.8552	
층 별 기본형 금액	104동	19,982,000	101, 102, 103동(21~22층) 128세대	21,769,000
			105, 106, 107동(14~18층) 85세대	21,382,000

1)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통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됨.

2)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2.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1)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2)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3)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4)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붙박이 가구, 주방형 발코니 가전제품) 공사 신청 불가함.
- 5)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6)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7)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와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8)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9)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10)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제3항’ 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11)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12)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13)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14)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15)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온돌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16)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7)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 ▣ 추가선택품목 계약

#### 1.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계약시	2014.09.30	2015.03.30	입주지정일
68.5888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거실, 현관	6,100,000	610,000	1,525,000	1,525,000	2,440,000
74.8552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거실, 현관	6,400,000	640,000	1,600,000	1,600,000	2,560,000

## 2. 플러스옵션

###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68.5888		74.8552		비고
	삼성	LG	삼성	LG	
시스템에어컨	내실,거실		내실,거실		
	내실,거실,자녀방1		내실,거실,자녀방1		
	내실,거실,자녀방1,2		내실,거실,자녀방1,2		
금 액	3,234,000	3,857,000	3,234,000	3,857,000	
	4,400,000	5,250,000	4,400,000	5,250,000	
	5,852,000	6,706,000	5,852,000	6,706,000	

- 시스템 에어컨 유형,가격등은 확정된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2개사 제품제시)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상기 선택품목에 대한 제제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사항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대금 : 지정된 납부 일에 시스템 에어컨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에어컨 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및 발코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납부계좌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금융기관	경 남 은 행	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계좌번호	514-07-0203231	
예 금 주	대한주택보증(주)	

3.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유의사항

-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2) 추가선택품목 공사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계약사항임.
- 3)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체결할 예정이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4)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5) 상기 비용은 발코니 외부샤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 6)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7) 추가선택품목 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통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8)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9)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10)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11)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12)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4.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금융기관	경 남 은 행	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계좌번호	514-07-0203231	
예 금 주	대한주택보증(주)	

- 1)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함.
- 2)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맞추어 상기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3) 계약자는 분양대금 일체를 상기의 납부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그 외의 방법(분양대행사에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음.

# 마감자재 목록표

신우산업개발희가로김해진영74TYPE 마감재 리스트						
구분		품명		모델명	업체명	비고
1 · 수 장 공 사	MAIN SHEET	전체		비닐시트랩핑	YD4304-F8	KCC
	현관/복도/ 거실/주방/식당	바닥		강마루	MG0402A- 리얼오크	KCC 숲강마루
		벽		국산벽지	CX2985-3	DID
		천장	메인	국산벽지	101-2	매화벽지
			단천장	국산벽지	3178-2	서울벽지
	안방/파우더/ 드레스실	바닥		강마루	MG0402A- 리얼오크	KCC 숲강마루
		벽		국산벽지	3300-2	서울벽지
		천장		국산벽지	101-2	매화벽지
	침실 2	바닥		강마루	MG0402A- 리얼오크	KCC 숲강마루
		벽		국산벽지	CX3675-1	DID
		천장		국산벽지	101-2	매화벽지
	침실 3	바닥		강마루	MG0402A- 리얼오크	KCC 숲강마루
		벽		국산벽지	3299-1	서울벽지
천장		국산벽지	101-2	매화벽지		
공용, 부부욕실	천장		SMC	SI-3A	새한산업	
2 · 타 일 및 석 재 공 사	현관	바닥	메인	폴리싱타일	DL-S0Q0113(600X600)	대림비엔코
			디딤판	엔지니어드스톤	EMA.7	가온ST
		걸레받이		엔지니어드스톤	EMA.7	가온ST
	거실	아트월	메인	폴리싱타일	FHP0126(200X800)	대림비엔코
			메인	폴리싱타일	FHP0126(100X800)	대림비엔코
			포인트	폴리싱타일	EHP0088(100X800)	대림비엔코
	주방/ 식당	상.하부장 사이벽체		국산타일	OZ505(300X600)	대림비엔코
	공용욕실	바닥		국산타일	SFE 8121(300X300)	삼영타일
		벽	메인	국산타일	SDK 233-1(300X600)	삼영타일
			포인트1(패턴)	국산타일	SDP 233-91(300X600)	삼영타일
			포인트2(솔리드)	국산타일	SDK 233-3(300X600)	삼영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EMA.16	가온ST

2 · 타 일 및 석 재 공 사		꼼꼼이		국산	CSA 1030	참스라인	
	부부욕실	바닥		국산타일	SFE 1265(300X300)	삼영타일	
		벽	메인	국산타일	SDK134-11(300X600)	삼영타일	
			포인트1(패턴)	국산타일	SDK134-4(300X600)	삼영타일	
			포인트2(슬리드)	국산타일	SDK206-3(300X600)	삼영타일	
			젠다이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EMA.15	가온ST
		꼼꼼이		국산	CSA 1050	참스라인	
	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LG 하이막스 G100(피넛 버터) 유사제품	새한산업		
	발코니1/대피공간	바닥		국산타일	SFE5333(300X300)	삼영타일	
	발코니 2 / 세탁공간	바닥		국산타일	SFE3230(300X300)	삼영타일	
재료분리대		인조대리석	LG 하이막스 G100(피넛 버터) 유사제품	새한산업			
3 · 창 호 공 사	목창호	도어	안방	비닐시트랩핑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침실 2	비닐시트랩핑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침실 3	비닐시트랩핑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공용욕실	ABS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부부욕실	ABS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목창호	도어	발코니 2	비닐시트랩핑	도면 참조(랩핑 : YD4304-F8)	재도 DAS	
	방화문	현관문	도어	분체도장	갑종방화문	신우OEM	
			문틀	도장	지정도장	신우OEM	
		대피 공간	도어	도장	갑종방화문	신우OEM	
			문틀	도장	지정도장	신우OEM	
4 · 가 구 공 사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A	프레임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	지정 화이트 HG도장	재도 DAS	
				도어손잡이	자체 손잡이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엇지접착	재도 DAS	
			신발장 B	프레임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4 · 가 구 공 사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B	도어손잡이	자체 손잡이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옛지접착	재도 DAS	
			창고	프레임	지정 화이트 HG도장	재도 DAS	
				도어	A/L프레임/흑니켈유광 패턴글라스(온글라스OA0022W)	재도 DAS	
				도어손잡이	자체 손잡이	재도 DAS	
				BODY	PB 18T /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거실	복도	프레임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손잡이	자체 손잡이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옛지접착	재도 DAS	
		안방	드레스룸	프레임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 1	패턴글라스(데코간지GZ-BONBON-114) 4면옛지바부착	재도 DAS	
				도어 2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손잡이	물방울바 부착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옛지접착	재도 DAS	
				시스템 선반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파우더장	프레임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상부장)	패턴글라스(데코간지GZ-BONBON-114) 4면옛지바부착	재도 DAS	
				도어(서랍)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도어손잡이	자체 손잡이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옛지접착	재도 DAS	
				상판	인조대리석(GT02 화이트스톤)	재도 DAS	
		침실 3	불박이장	프레임	지정 화이트 HG도장	재도 DAS	
				도어	지정 화이트 HG도장	재도 DAS	
도어손잡이	지정시트(KCC YD4304-F8)			재도 DAS			
BODY	지정 시트+0.45T PVC 옛지접착			재도 DAS			



4 · 가 구 공 사	주방가구	본주방	상부장	도어	지정 화이트 HG도장	한샘	
			하부,TL장	도어	지정시트(한샘 유로 8000 크림 오크)	한샘	
			TL장 측면		지정 화이트 HG도장	한샘	
			아일랜드	도어	지정시트(한샘 유로 8000 크림 오크)	한샘	
			상,하부,TL장	BODY	15T PB / 한샘 나노 그레이	한샘	
		본주방	상판	하이막스	인조대리석(AS644 아스펜스터코우)	삼성 스타론	
			아트월	벽체 알판	지정 화이트 HG도장	재도 DAS	
			가전기기	4구가스쿱탑	NA64F5S2BNS	삼성	
		오븐		HSB-N361B	삼성		
		후드		inno 하이드 빌트인후드	한샘		
욕실가구	부부욕실 공용욕실	AL슬라이딩도어	도어 AL+3T은경	새한산업			
		BODY	PS 전사	새한산업			
		약세서리	가이드바(세로/가로)+망선반	새한산업			
5 · 설 비 공 사	욕실	공용욕실	세면대	CL-333	대림바스		
			양변기	CC-762	대림바스		
			세면기수전	KF-1601	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조수전	KF-2801	아메리칸 스탠다드		
			슬라이딩바	WJ-105	우진홈센스		
			수건선반	WJ-205	우진홈센스		
			잡지꽂이겸용 휴지걸이	WJ-403	우진홈센스		
			수건걸이	수건걸이	우진홈센스		
			코너선반	WJ-307	우진홈센스		
		부부욕실	세면대	CL-756	대림바스		
			양변기	CC-762	대림바스		
			비데	SMARTLET 300	대림바스		
			세면기수전	KF-1601	아메리칸 스탠다드		
			해바라기샤워	KF-5821	아메리칸 스탠다드		

5 · 설 비 공 사	욕실	부부욕실	잡지꽂이겸용 휴지걸이	WJ-403	우진홈센스		
			수건걸이	수건걸이	우진홈센스		
			코너선반	WJ-307-1	우진홈센스		
	수전류	주방	싱크 수전	KF-1702	아메리칸 스탠다드		
		발코니1	발코니수전	KF-4029	아메리칸 스탠다드		
		발코니2	세탁수전	냉:KF-4029 온:KF-4129	아메리칸 스탠다드		
	기타	특화ITEM	실별온도제어	KKR-M,S	광성계측기		
6 · 전 기 공 사	조명	현관	매입등(센서)	SKL-2014-09	신우OEM		
		복도	매입등	SKL-2014-10	신우OEM		
		거실	직부등	SKL-2014-01	신우OEM		
		주방	본주방	매입2등	SKL-2014-05	신우OEM	
			본주방	매입1등	SKL-2014-06	신우OEM	
			식탁등	팬던트	SKL-2014-04	신우OEM	
		안방	안방등	직부등	SKL-2014-02	신우OEM	
			대피통로등	매입등	SKL-2014-11	신우OEM	
		침실2, 3		직부등	SKL-2014-03	신우OEM	
		욕실	위생도기위	매입등	SKL-2014-07	신우OEM	
			샤워부스위	매입등	SKL-2014-08	신우OEM	
		발코니		직부등	SKL-2014-12	신우OEM	

※68.5888㎡TYPE 같은 경우 74.8552㎡TYPE와 동일한 마감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적용)

구 분	적 용 여 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치할 예정임을 공고함.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요

- 경비실, 관리사무소 / 통신실 / 감시제어반실, 지하주차장, 전기실 / 발전기실 / 펌프실
- 배드민턴장(1)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단위 : 원)

구 분	면 적(m <sup>2</sup> )	감 정 기 관	감 정 금 액
공동주택(아파트)부지	14,333.6m <sup>2</sup>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9,718,180,800
		(주)삼창감정평가법인	₩9,374,174,40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건 축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659,979,568
전 기	(주)유일테크엔지니어링	₩28,000,000
통 신		
소 방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총세대수 공급내역

구 분	주 택 형		합 계
	68.5888	74.8552	
일반분양	86	213	299

## 기타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규모의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순위자 포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함.
- . 선순위 청약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반드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함.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건본주택에서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 할 수 있음.
- . 건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건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건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는 품목이 아님.
- . 건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냉장고, TV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등은연출용임.
-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알선 또는 업체의 선정 등을 하지 않으니 개별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샷시,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함.
- . 주택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의 주변상황 도로, 소음,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건본주택 공개 후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
- .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 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품이 단종시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으로 시공 됨.

- .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의 특성상 본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하지 않음.
-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신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건본주택 (모델하우스),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카다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 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홈페이지에 표현된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동영상으로, 계약 전 건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존)
-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신우회가로)는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차량소음, 진동, 야간조명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제기할 수 없음.
-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입주자께서는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인하신 후 청약해 주시기 바람.
-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 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 102동의 1층 2호라인은 관리사무소, 필로티가 설치되므로 견본주택내에 전시된 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라인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 단지 주변에 밀집된 주택가가 인접해 있으므로 주변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 침해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시설물의 변경과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실제 시공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 등의 시설물이 주동과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
- . 주민공동시설 및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확정 시공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 각 주택형별 선택사항에 따라 마감 및 가구설치 모양이 달라지며, 계약시 선택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변경이 불가함.(견본주택 참조)
- . 본 주택의 난방방식 및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일부 세대의 경우 주차장 및 연결통로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서 해당 세대 EV홀까지 보행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의 인접경계부와 고저차는 약 -1m ~ -10m로 단지가 높고, 부지경계는 옹벽 및 전석이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외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옹벽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 과정 또는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천정부위에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정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 될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 발코니 분합문(내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음.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에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내 전력 및 통신 공급을 위한 기간 사업자의 관로 및 맨홀, 기타 시설물이 건축물 내에 설치 될 수 있음.

- . 화강석 시공부위는 원석(석회암)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과 스크레치가 발생할 수 있음.
- .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 동의 필로티의 높이는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협의 결과로 서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주) 주택분양보증 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412014-101-000500호	₩43,793,666,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 106호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증사고의 내용 : “보증사고”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 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흙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명 : (주)신우산업개발 (법인등록번호 :191211-0002108 , 주택사업자등록번호 :경남-주대1990-0114)

■ 시공업체명 : (주)신우종합토건 (법인등록번호 :194211-0045189 , 건설업 면허 등록번호 : 토목건축공사업 제17-0062호)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99-8번지 신우회가로 모델하우스 (분양안내 : 055)344 - 000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